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55

발의연월일: 2021. 10. 15.

발 의 자:김병욱·김교흥·김정호

서동용 · 윤후덕 · 이병훈

이상헌 · 전재수 · 조승래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외국인투자자들이 해외 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에 대해 해외 펀드가 얻은 소득의 원천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있음.

반면, 해외 펀드와 경쟁하는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일부 외국 연·기금 투자자에 국한하여 해외 펀드의 외국인투자자들과 과세상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나머지 외국인투자자들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세중립성·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필요성이 증대되는 기업구조개선의 필요자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부수적으로 세수창출과 고용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의 소득구분을 해외 펀드에 대한 외국인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의 원천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모든 외국인투자자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를 통해 수취하는 소득의 구분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얻은 소득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8제3항 단서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는"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0 조의18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 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	③
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	
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	l
적동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	<u>비거주자 또는 외국</u>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	법인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	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
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	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
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는-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	
•기금 등으로서 배분받는 소	
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수동적동업자는</u>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제17조제1항, 제11	

9조제2호 및 「법인세법」제93 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